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수표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. 4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피고는 액면 금 1,000,000원, 발행일 2002. 3. 31. 발행지 ○○시, 지급지 ○○은 행 ○○지점으로 된 선일자 소지인출급식 가계수표 1매를 원고에게 발행·교부함으로써, 원고는 위 가계수표의 소지인이 되어 같은 해 2002. 3. 31. 지급지 장소에 이르러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. 수표면상에 예금부족으로 인하여

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. 2. 그러므로 원고는 위 수표금 1,000,000원 및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2. 4. 1.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에서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가계수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 xw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
			<u> </u>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月 8	·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		
	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및 기 간	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	• 수표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수표 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		
기 타	져야 하고 수표는 원인관계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수표상의 권리를 표창		
	하는 증권이므로, 수표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수표상의		
	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입증하여		
	야 하는 것은 아님(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6다52205 판결).		
	•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		
	제시를 하여야 함(수표법 제29조 제1항, 제4항).		
	·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에 영수를 증명		
	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(수표법 제34조 제1항).		
	수표상의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수표상의 채무자에		
	게 자기가 수표상의 권리자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하여야		
	하고, 수표상의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게 하기 위하		
	여 수표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수표상의 채무자에게 수표를 반환하여야		
	하므로 원칙적으로 수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, 만일 그 의사에 반		
	하여 수표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받아 그 소지인 자격		
	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, 예외적으로 수표상의 권리자가 미리 수표를 수		
	표상의 채무자에게 교부한 경우 등 수표상의 채무자에게 수표상의 권리		
	자가 누구인지 명백하고, 나아가 이중지급의 위험성이 없음이 분명한		
	경우에는 수표상의 채권자가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표상의		
	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임(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다60948 판		
	결, 청주지법 1999. 9. 30. 선고 99나22 판결 참조).		
	·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①지급이 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, ②제시		
	일 이후의 연 6%의 이율에 의한 이자, ③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		
	효력이 있는 선언의 비용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		
	있음(수표법 제44조).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어음·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9조).

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수표의 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

※ (2) 이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